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김 상 호 **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
- III.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제도
- IV. 주요과제 및 효율화 방안
- V. 결 론

* 이 논문은 2004. 9. 4.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주제로 한국중재 학회가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중재인협회와 공동 주최한 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논문제목 :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과제)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I. 서 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동년 12월 16일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동회담에서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상사분쟁해결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증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그에 비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전통적인 동서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역, 투자 등 남북한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공정하고 신속·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간에는 남북경협에 적용할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최근까지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8월 20일 남북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개 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¹⁾하였고 이후 10월 12일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중재위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²⁾

따라서 남북 당국간에 제도적 중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할 '남북상

1) 2003. 8. 20.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에 관한 통일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참조.

2) 전문 및 14조로 구성된 이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립(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이며 북측 서명자는 건설전재공업성 부상 최영건(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이다.

사중재위원회’의 탄생으로 향후 남북간에 발생하는 교역 및 투자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중대한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될 것이다.

4개 합의서 중 투자보장합의서를 보면 남측이 요구했던 내국민대우조항은 넣지 않은 대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최혜국대우조항에 합의했다.³⁾ 북한은 그간 합영법 등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보호하고 있었으나 남한 투자자에 대한 이를 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보장합의서의 발효로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제도적으로 제거되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대북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 당국이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시킨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북한이 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제정한 주요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및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어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구성과 재정운영 방안을 상사중재의 실무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3) 투자보장합의서 제3조 제1항.

II. 북한의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

1. 외국인 투자법령의 제정과 분쟁해결

(1) 개 환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을 시발로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기존의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3년 1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인세금법, 외화관리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⁴⁾ 등을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세관법, 토지임대법 등의 제정과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은 이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⁵⁾을 모법으로 두고 그 하위체계로 이른바 투자 3법인 합영법⁶⁾, 합작법⁷⁾ 및 외국인기업법⁸⁾이 중심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투자 3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에 속하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전반을 규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

4) 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및 1993.4.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이 법 제정 당시의 명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었으나 이후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5)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6) 1984.9.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및 1994.1.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

7)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8)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및 1992.12.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국인기업의 설립운영, 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이다.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내에 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외국투자은행법⁹⁾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하여 북한에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한이 외국은행 유치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외화조달과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95년 2월 대외경제계약법¹⁰⁾을 제정·공포하였다. 1985년에 제정된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본따 만든 듯한 이 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북한도 이제는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사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틀격을 갖추게 되었다.¹¹⁾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중재는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상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총괄법으로 1999년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한 바 있다.

2002년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¹²⁾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금강산관광지구법¹³⁾을 제정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지구개발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

9) 1993.11.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및 1993.12.10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10) 1995.2.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1)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법무』, 1995.8, pp.12-13.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2002.11.20).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2002.11.13).

이 결합하여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으로 남북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대치구역인 개성지역의 개방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분쟁해결조항 분석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실패시에는 북한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최종해결을 위한 중재신청에 앞서 협의를 통한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¹⁴⁾

분쟁해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방법”이란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노력은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북한의 중재기관이 개입하여 알선이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재 전(前) 상사분쟁 해결수단의 하나인 클레임 알선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알선제도는 중재법규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중재와는 별개로 중재 전 단계에서 시도되는데 분쟁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클레임 알선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된다.¹⁵⁾ 중재 전 단계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는 국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개방정책 실시 이후 서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 등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¹⁶⁾

14)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주요 법률인 외국인투자법(제22조), 합영법(제47조), 합작법(제21조), 외국인기업법(제31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42조), 대외경제계약법(제42조)에서는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의견상이에 대해 예외 없이 먼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15) 대한상사중재원이 행하는 클레임 알선의 근거법은 중재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다.

16) 1979년 미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미·중국 무역협정 제8조와 1992년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 무역협정 제8조에는 중재 전 단계의 분쟁해결 노력으로 당사자간의 우호적 협상이나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재의 경우 강조하는 '중재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외경제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국의 중재기관" 언급이나 남북당국간에 합의된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의 분쟁해결구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임시적 중재(ad hoc arbitration)가 아닌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중재를 부탁할 특정의 중재기관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 중재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합의하지 않고 분쟁 발생 후 그때마다 중재인이나 준거법 등을 개별적·임시적으로 결정하여 중재를 진행시킨다면 임시적 중재가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무역협정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다.¹⁷⁾ 북한은 분쟁발생 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북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점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중재절차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외에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북한인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까지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서방국가와도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과 동법 시행세칙 및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17)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3항.

합자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 단독출자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북한내 해당기업 내지는 북한 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투자관련 법령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력,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 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투자관련법령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북한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열거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와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상사중재의 국제성을 인정하는 고무적인 조치로 보인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최종해결을 의도하고 있다.¹⁹⁾

18)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p.135.

19)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9조.

2.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1) 주요내용

북한은 1999년 8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총 4장 43조로 구성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²⁰⁾ 그간 북한은 1992년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가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고 1993년에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방하였고 계속해서 상당 수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과의 분쟁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 규가 없어 대북한 투자자나 상거래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따라서 북한이 그간의 지지부진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신중재법인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경제중재법 제1장²¹⁾에서는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염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할 2개의 상설중재기관으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과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제4조에서는 중재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북한의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②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③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20) KOTRA, 북한뉴스레터, 1999년 8월호.

21) 대외경제중재법 제1조-제7조.

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④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⑤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⑥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포, 외국인사이에 생긴 분쟁이다.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한다.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과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이 법은 제7조에서,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 제4장²²⁾에서는 재결(중재판정)과 그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결은 원칙적으로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선고한다. 재결문(판정문)은 조선어로 작성하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재결문은 재결원(중재인)의 수표(서명)와 중재위원회(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조선해사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재결문을 받는 날부터 30일안으로 재결문의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해석해 줄 것을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의 취소는 재결문을 받는 날부터 6개월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

22) 대외경제중재법 제35조-제43조.

결에 따라 집행해야 할 재산이 북한 영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2) 평 가

북한에서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은 없었다.

북한에서는 195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의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 ‘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정’과 1989년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된 ‘중재심문규칙’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²³⁾

그러나 대외경제중재법의 채택으로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익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의 기본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중재기관의 일원화 및 중재대상의 명확화이다.

종전에는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었고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으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로 중재기관이 일원화되었다. 또한 중재대상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해외조선동포 등으로 명시하였다. 이 중 해외조선동포를 포함시킨 것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대리인 및 재결원의 자격요건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시켰다.

둘째,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준수 의지의 표명이다.

23) 법원행정처, 전계서, pp.137-141참조.

대외경제중재법은 제7조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타국과의 협조와 교류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띤다. 이는 이전의 북한 중재제도에서 중재결과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 규정으로 생각된다.

셋째, 분쟁해결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한 점이다.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분쟁해결의 원칙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였다. 동법 제12조에서 접수결정 여부를 10일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 동법 제31조에서 중재심리기간을 5개월로 정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제1조에서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천명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준의 태도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분쟁해결의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되며 중재판정 집행상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²⁴⁾과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워싱턴협약²⁵⁾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대북한 무역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24) 정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며 1958년 6월 10일 UN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하에 탄생하였다(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30, p.38 No.4739, 1959). 우리나라에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25)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며 약칭하여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이라고 한다. 세계은행 주도하에 1965. 3. 18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 10. 18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이 협약에 1966. 4. 18에 서명한 후 1967. 2. 21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년 3. 23에 발효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 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이다. 투자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제간의 자본투자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워싱턴협약 탄생의 배경이다.

III.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제도

1. 배 경

남북한은 2003년 10월 남한의 문산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에서 중재위합의서에 서명하였다.²⁶⁾

동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이며, 북측 서명자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이다. 합의서는 남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현재 남측은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위합의서의 체결 근거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중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⁸⁾

26) 통일부, 「북한동향」, 제664호(2003.10.10-16), p.28.

27) 중재위합의서 제14조 제1항.

28)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4항 및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

2.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

(1)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

중재위합의서는 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독자적인 법인능력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며 각자 남과 북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에서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³⁰⁾ 중재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³¹⁾

남과 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이들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였다.³²⁾

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갖는 주요 업무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인 중재관련업무로서 중재의 개시, 진행 및 종료절차를 공정·

29) 중재위합의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

30)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2조, 중재위합의서 제2조 제1항.

31) 중재위합의서 제9조 제3항.

32) 중재위합의서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관리를 위한 제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투자에 따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주관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각 중재위원회는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각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중재인 중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상대방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³³⁾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2)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수립기관

중재위원회는 남북 쟁방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³⁵⁾

그렇다면 정책수립의 내용이 되는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33)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및 제5조, 중재위합의서 제3조.

34)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제3항.

35)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6항, 중재위합의서 제3조 제4항.

도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시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에 가입하는 문제, 남북 중재위원회와 남북한의 상설중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의 체결문제 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정책적 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실무에 도입하는 문제들을 정책수립의 현안과제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중재중심센터로 발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 및 북일간 수교에 따른 경제교류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상사분쟁해결 기구로 성장해야 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분쟁해결기구로서도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간에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한·중·일 3국간의 FTA체결도 3국간에 민간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⁶⁾ 따라서 한·중·일FTA가 체결되는 경우에 대비한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의 해결도 염두에 둔 정책수립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36)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간의 FTA체결을 위한 협상은 한중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른 한중 공동성명(2003. 7. 8, 베이징) 제10항에서는 “양측은 한·중·일간의 협력강화가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3. 중재위원회의 분쟁처리업무

(1) 분쟁해결의 원칙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먼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사분쟁은 중재 전(前) 단계인 '협의' 단계에서 많이 해결될 것이고 분쟁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협의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전 단계에서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전례는 과거 동서국가들 중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협정에서 발견된다. 이는 분쟁처리에 있어 우호협상이나 타협을 중시하여온 중국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1992년에 우리 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 무역협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중 무역협정에서는,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러나 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중국과 일본간의 무역협정에서도 한·중 무역협정에서와 비슷한 표현을 하였다. 즉,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우호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우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1979년에 체결된 미·중 무역협정에서도 중재 전 분쟁해결수단으로 우의적 협상이나 조정 혹은 상호간에 수락이 가능한 다른 수단

37)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1조.

38)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을 강조하고 있다.³⁹⁾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⁴⁰⁾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거래당사자들이 마음놓고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상사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업무

1) 문제의 제기

이는 남북간 교역 및 경협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업무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이다. 아직 분쟁해결에 관한 시행규정 등이 제정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분쟁당사자로 '당국'을 명시한 것은 국영무역이 중심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남북간 교역에서 우리 기업 측에서 제기한 불만들을 보면, 대북 교역에서 북한상사나 북한측 중개상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측의 납기위반과 품질위반이 계약위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북한측에서 남한측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대금미결제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그간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에 관여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북한당사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

39) 미·중 무역협정제8조 제1항.

40)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아직 남북한간에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분쟁사례의 공개로 대북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일원에서 발행한 자료와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남북 교역에 따른 갈등의 정도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분쟁사례

먼저, 통일원의 자료에서 살펴본 분쟁사례이다.⁴¹⁾

국내업체가 땅콩 300톤을 반입하여 제과업체에 공급하여 사용하였는데 품질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부산항에 반입된 2차분 2,000톤은 제3국산 위장반입 혐의로 인해 물품이 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7면). 남한에서 반입한 평양소주가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한 북한 당사자가 남한 당사자와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서에 위반되는 2배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167-169면). 대북 반출은 홍콩이나 중국 측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기업이 1995년 1월 홍콩 측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S해운을 통해 설당 2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한 후 대금지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국내 반출업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Unpaid통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네고서류 중 Invoice에 DPRK 표시가 빠졌다는 것이었다(191-193면).

남북한간의 연계교역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합의 후 물물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며 결제는 제3국(홍콩이나 중국)을 통한 신용장개설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간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농산물(피호두, 깐호두, 고사리 등), 한약재와 남한의 세탁비누, LDPE와의 연계교역 실적이 있다.

연계교역에서 문제가 된 경우로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이 견본과 크게 상이해서 남한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착물량이

41)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IV권(1995. 12). 이 사례집은 IV권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계약물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연계교역의 경우 홍콩이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기업으로서는 이점이 문제였다(209-214면).

다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분쟁사례이다.

■ 사례-1⁴²⁾

본 사례는 남북교역에서 제3국이 피해를 본 경우이다. 이 사례는 남북간 교역에 알려든 중국 티베트자치구가 농산물 판매대금을 떼이게 되자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문제가 된 경우이다. 1994년 11월 부산의 S무역이 마카오 소재 북한 무역상사인 Y무역을 통해 북한산 깐호두 250톤을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Y무역은 북한에서 물량확보가 어렵게되자 중국 티베트자치구와 계약, 1995년부터 3차에 걸쳐 티베트 산 깐호두 243톤을 S무역에 공급했다.

그러나 깐호두를 공급한 티베트무역협회가 북한으로부터 전체 대금 중 1차분인 25만불(50톤)밖에 받지 못했고 2-3차분 109만불(218톤)을 북한측의 대금지급 기피로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티베트 측이 북한 Y무역에 항의하자 Y무역은 남한의 S무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한편 위임장을 써주며 S무역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적인 위신이 걸린 고소사건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이 S무역을 수사한 결과 S무역은 깐호두 1차분(25만불)과 2차분 대금(21만불)을 이미 북한 Y무역에 현금결제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3차분 88만불은 1994년 Y무역에 반출한 컴퓨터와 백설탕, 생고무 등 생필품대금과 상계처리 되어 사실상 S무역이 깐호두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상사의 계약위반으로 야기되었는 바 티베트 측이 받지 못한 문제의 대금은 티베트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42) 부산일보 30면(1996.6.11).

■ 사례-2⁴³⁾

남한의 중소기업체들이 지난 수년간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의 개성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북한 농수산물을 반입해간 후 최소 100만달러에서 최대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북한측의 클레임제기이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 바다지렁이와 고사리대금 19만달러를 결제하지 않고 있는 P주식회사가 대표적 케이스다.

물건 반입이 끝난 작년 말부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결제를 미루더니 최근에는 아예 연락조차 끊고 있다는 것이다. 고사리 대금 12만 달러를 연체중인 S종합주식회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급속 경색 조짐을 보이는 남북한간 경협은 이 같은 대금 미결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반입 물품 미결제는 7-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규모는 100만달러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업체별로 확인해 보니 원래 계약했던 것과 달리 품질이 조악해서 클레임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라는 것이다.

또한 신문에서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양측간의 서로 다른 주장을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관련 법규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

(3) 투자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업무

이는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 투자보장합의

43) 문화일보 1면 및 5면(2004.8.12).

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남북한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당국)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말한다.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먼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자자’란 남북한 어느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①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과 ②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⁴⁴⁾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주요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②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③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④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⑤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⑥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⁴⁵⁾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관련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44)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2항.

45)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1항 및 제3항.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따라서 중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남북한 당사자 모두 회사, 협회, 단체와 같은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이지만 이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우려가 큰 문제점이다.⁴⁶⁾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이 성공하고 서방 국가의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북한의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 가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IV. 주요과제 및 효율화 방안

1. 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중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간 무역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국제적 상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종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당하게 되었고 대신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에 의한 해결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상사중재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국내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더욱 그 중요성이 입증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마다 중재법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세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상사중재제도의 원활한 운영,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

46) 남한의 어떤 기업과 일본(혹은 미국)의 어떤 기업이 합작투자회사를 남한에 설립하고 이 합작회사가 북한 지역에 진출한 후 북한 측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차대전 후 UN주도하에 탄생된 뉴욕협약이다.

뉴욕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공법인이 사법관계에 관하여 중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상공회의소 부설의 또는 독립적인 상설중재기관⁴⁷⁾에 의한 중재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과거 소련 및 동구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뉴욕협약가입 시기가 자본주의 주요 국가의 가입보다 앞서고 있다.⁴⁸⁾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도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방화 진전 및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추세에 부응하는 상사분쟁해결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 제도적인 상사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은 상거래의 속성상 남북한 경제교류와 대북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재위원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국제성을 가지며 제도화된 분쟁해결제도인 상사중재제도가 남북한 경제교류 및 대북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임을 남한 당국이 북한 당국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다. 북한측도 남한을 포함한 서방 측의 자본도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쟁해결의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거래 속성상 경제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상사중재제도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온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47)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협정을 체결한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이 대표적 예에 속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 무역중재위원회' 및 '조선해사중재위원회'도 동일 형태의 중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8) 과거 소련은 1960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미국(1970) 및 일본(1961) 보다 앞서고 있다. 동구권을 보면 폴란드가 1962년, 폴란드가 1961년, 체코슬로바키아가 1959년, 동독이 197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한편 중국은 본격적인 개방(1979년) 이후 8년이 지난 1987년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당시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간에 합의된 부속합의서⁴⁹⁾ 제1장(경제교류·협력) 제1조 제12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증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속합의서 체결 다음달인 10월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년 후(1993년)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그리고 2년 후(1994년)에는 1984년에 제정된 기존의 합영법을 개정하였으며 3년 후(1995년)에는 대외무역관련 상사계약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과 중재 중 어느 하나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제3국 중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⁵⁰⁾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전 해인 1999년에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외자유치관련 법규 정비작업의 1차적 완결작업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외경제 분쟁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동 중재법의 내용을 현대적 중재제도에 부합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국제성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제성을 가진 중재기관이란 무역, 투자 등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중재기관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은 물론 중재지 결정이나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 분쟁당사자의 합의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치를 갖춘 중재기관을

49)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50) 합영법 제47조, 외국인투자법 제22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42조 및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말한다. 또한 내려진 중재판정을 당사자가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그에 비례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전통적인 동서국가간의 동서무역 및 이들 국가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 투자 등 상사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공정하고 신속·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남북한 교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제3국이 분쟁당사자로 등장할 수 있음은 위의 분쟁사례에서 본 바와 같다. 즉, 남북한 교역 당사자 뿐만 아니라 티베트자치구의 간호두 공급자인 티베트무역협회가 분쟁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북미간 및 북일간 수교가 되는 경우 예컨대, 남한에 소재하는 한일합작회사가 북한에 진출하여 물품을 제조하거나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북한 당사자와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거나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도 빈번해질 것이다.

또한 한·중·일 및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이 본격화 될 경우 이들 국가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제3국 중재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유력한 중재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중재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성을 가진 중재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중재위원회의 구성방향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재위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되어야 한다.⁵¹⁾

이와 함께 중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나 여타의 남북대화기관과 달리 남북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체의 정치적 성격이 배제되고 공정한 중재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⁵²⁾

이러한 노력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재위원의 전문적 시견과 안목에 따른 노력과 부합되어 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재위원장과 위원은 부여된 임기 4년 동안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내외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들 중에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합의서로서 이들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이설이 있지만)국제간의 ‘조약’에 해당된다는 점,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중재사무처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중재인 기피관련 업무와 중재판정취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해결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등법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위원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중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은 과도기적으로 초기단계에는 비상근으로 하고 각자 자

51) 중재위합의서 제2조 제2항.

52) 강병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법무부 주최 논문집(제 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04. 6. 28), p.121. p

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중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재위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보좌인원 포함)은 중재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다.⁵³⁾ 따라서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장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남한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남측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위원 4인은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1인은 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청의 현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과 달리 중재인명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단은 개별적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이므로 보다 실무적인 전문성을 구비한 자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투자실무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중재실무와 관련 법령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중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⁴⁾

3. 중재위원회의 운영 방향

(1) 사무처리기관의 지정

상사분쟁해결협의서와 중재위합의서에서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

53) 중재위합의서 제11조 제4항.

54) 장문철 교수의 토론자료 참조(위 ‘법무부 주최 논문집’, p.148).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 이는 중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이 ‘상사분쟁해결기구’이지만 제반 기능 중 실제의 분쟁사건의 처리는 각기 자기족의 전문 중재기관에 맡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경우 현재 국내외 상사중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 정부는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중재원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⁵⁶⁾

중재법의 규정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서도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클레임 알선업무(클레임관련 의견진술 및 서류제출요구)와 중재계약체결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⁵⁷⁾ 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선적 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해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하고 있고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⁸⁾

이렇게 볼 때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이므로 남북 중재위원회의 남측 사무처리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대한상사중

55)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1항 및 중재위합의서 제10조 제1항.

56) 중재법 제40조-제41조, 동법 부칙 제3항.

57) 대외무역법 제41조.

58) 대외무역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104조 제1항-제2항.

재원은 1966년 설립 이래 오랜 세월 국내외 상사분쟁사건을 알선, 조정 및 중재해왔으며 분쟁사건의 처리와 대외 중재협력의 강화를 위해 그간 많은 국가의 주요 중재기관과 중재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중재실무에 적용해 왔다.⁵⁹⁾

중재위원회가 자기측 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대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분쟁사건의 중재와 조정사무 처리업무를 수행하자는 의견이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의 분쟁해결메커니즘과 상치되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된다.⁶¹⁾

(2)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1) 기금 확보의 중요성

예정대로라면 2004년 8월중 중재위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의 체결동의를 받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하게 되면 금년 10월중에 합의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남북관계에는 주로 정치적 변수가 남북 경제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59)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39개국의 대표적 중재기관과 중재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원활한 중재절차진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1973년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와 중재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4년에는 미국중재협회와, 1978년에는 ICC(국제상업협의소) 국제중재법원과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정부의 북방정책의 추진에 호응하여 1992년에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1994년에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과도 중재협정을 체결한 것을 위시해서 동구권의 주요 사회주의권 국가의 중재기관과도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의 주요 국제협력기관인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산하의 지역중재기관과도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60) 강병근, 전계논문, pp.124-125.

61) 분쟁처리업무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 중재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여타의 업무들(중재인 기피, 중재판정 취소, 기타 남북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제반 정책적 협안업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남북 공동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단독으로 설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사분쟁해결합의를 포함한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이미 발효중에 있으며 2004년 6월 30일자로 개성공단의 시범단지(2만 8천평)가 준공되었고 연내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는 남한측의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사가 선정완료 되었다. 북한측의 개성공단에 거는 기대가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돌발적 사태의 발생이 없으면 중재위합의서의 북한측 발효절차도 예정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 등 상사분쟁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기금확보는 주요문제로 부각된다고 하겠다.

중재위합의서는 위원회의 재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국제적 성격을 가진 명실상부한 중재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재정운영 방안

첫째, 기금이 확보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62) 중재위합의서 제11조. 한편, 동 합의서 제2조 제7항과 제8항에서는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제11조의 위원회 재정과 관련시켜 볼 때 보좌인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서기”는 유급의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상의 분쟁해결매커니즘으로 볼 때 서기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재위원회와 분쟁사무처리기관은 물론이고 남북 중재위원회 상호간의 업무협조에 관련된 제반 실무적인 업무를 서기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부정적이다. 기금의 사용 용도가 “남북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남북 상사중재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⁶³⁾

둘째, 재정은 (남측)중재위원회와 (남측)분쟁사무처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분쟁사무처리기관의 경우를 보면 남북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며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뒷받침해야 한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 전 단계에서의 분쟁해결노력인 “협의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구성 및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의”的 좁은 의미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직접 접촉이 되겠지만 분쟁사무처리기관의 알선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촉진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방식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알선제도와 유사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2003년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를 보면 중재신청이 211건이고 클레임알선이 453건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듯이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에서도 중재나 조정사건보다는 협의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2003년도 ‘상담’신청이 5,221건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남북간에도 상담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한국기업 입주가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분쟁사건의 예방차원에서의 상담(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기타 관련 법제 문의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조직대비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중

6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참조.

재인에게 지급하는 수당(보수)이 당사자가 납부한 중재비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중재인수당도 일부 보조하는 예산상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⁶⁴⁾

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분쟁사건의 직접적인 처리는 자기측 분쟁처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겠지만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업무,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의 존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업무,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관련된 업무, 중재인명부의 확정·등록업무,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에 관련된 업무, 남북간 상사분쟁의 공정·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대책수립업무,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간 예산 및 기금 규모 추산

기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국고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이 확보된 후에는 기금의 이자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금의 이자는 현행 금융권의 평균이자율에 입각해서 계산되어야 하며 중재위원회와 분쟁사무처리기관의 1년간의 예산이 충족될 수 있는 만큼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상기 2)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남측 중재위원회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연간 운영비 내역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건비에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합의서상의 필수인원인 서기 1명으로 했고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상근직원 3명을 기준으로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보수에 준하여 편성하였다. 사무실임대료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간 사무실 임대료의 1/3수준으로 하여 각각 계상하였다. 업무수행을 위한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프린트, 팩스, 전화기 등)는 중재위원회와 분쟁사무처리기관 공히 동액으로 계상하였다.

64)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인수당 지급시 일정금액을 중재원 자체의 예산으로 별도 보조하고 있다.

회의비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남북 중재위원회 합동회의와 남북 중재학술회의를 염두에 두고 7천만원을 계상⁶⁵⁾하였고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경우에는 중재절차 진행협의 및 협조를 위한 중재위원회와의 협의, 대북 진출기업과의 클레임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 중재위원 활동비는 연간 20회기준의 각종 회의참가를 예상하고 3천만원을 계상하였다.

예비비는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공히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 중재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등 남북 쌍방의 중재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경우에도 남북의 각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재협정 체결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납부한 중재비용 중에서 중재인에게 지급하는 중재인수당(보수)에 일부 보조하는 경우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에서 집행되어야 할 중재판정 집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중재판정금’을 남한측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⁶⁶⁾ 예산반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에 남북 당국이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재판정금 보전의 기준과 적용 요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구상은 자칫 정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악용될 경우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제도 자체의 무용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경우 중재규정, 안내책자 발간이나 기업체 계몽

65) 북한은 아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이나 국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위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폐쇄적 중재환경을 국제사회의 선진화된 중재체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6) 강병근, 전개논문, p.126.

강좌 등에 대비하여 자료발간 및 홍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다.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연간 운영비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재위원회는 연간 3억5천만원, 중재사무처리기관은 3억7천만원으로 추산할 때 연간 총 7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계상해 보았다. 이를 금융기관(은행)의 세액 공제 후의 순수 수신금리 3%로 상정할 때 240억원의 기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다.⁶⁷⁾

■ 중재위원회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연간 운영비 내역

중재위원회(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남측)
1. 인건비(중재서기 1명) 70,000,000원	1. 인건비(3명) : 160,000,000원 -상위간부급 1명 : 70,000천원 -중간간부급 1명 : 50,000천원 -경력직원(대리)급 1명 : 40,000천원
2. 사무실 임대료 : 100,000,000원 *사무처리기관 임대료에 준함 -위원장실 1개 -회의실 1개 -업무용 사무실(중재서기 등)	2. 사무실 임대료 : 100,000,000원 *중재원 연간임대료의 1/3 계상 -상담실 1개 -중재판정실 1개 -업무용 사무실
3. 기자재 : 33,000,000원 ·컴퓨터 5대X3,000천원=15,000천원 ·복사기 2대X5,000천원=10,000천원 ·프린트 5대X1,000천원=5,000천원 ·Fax 2대X1,000천원=2,000천원 ·전화(5대)=1,000천원	3. 기자재 : 33,000,000원 ·컴퓨터 5대X3,000천원=15,000천원 ·복사기 2대X5,000천원=10,000천원 ·프린트 5대X1,000천원=5,000천원 ·Fax 2대X1,000천원=2,000천원 ·전화(5대)=1,000천원
4. 회의비 : 70,000,000원 -남북중재위원회 합동회의 : 20,000 천원 ·10회 X2,000천원 기준	4. 자료발간 및 홍보비 : 20,000,000 원

67) 동 기금 추산액은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에 따라 당연히 액수의 증감이 있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중재학술회의 등 : 50,000천원 · 남북한 학술회의 : 30,000천원 · 중재인·조정인 합동회의(10회) : 10,000천원 · 유관 기업체 합동회의(4회) : 5,000천원 국내 관계 정부기관 회의 등(4회) : 5,000천원 5. 중재위원 활동비 : 30,000,000원 · 연간 약 20회 각종회의 참가 예상, 회당 평균 30만원 예상 (5인X300천원X20회=30,000천원) 6. 예비비 : 20,000,000원 -쌍방의 중재위원회가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 업무에 사용가능(중재인 기피신 청이나 중재판정 취소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규정, 안내책자 등 : 10,000천원 -기업체 계동홍보 및 강좌 : 10,000천원 5. 유관기관 회의비 : 10,000,000원 -중재위원회와 협약의 -대북 진출기업과의 세미나 개최 등 6. 예비비 : 20,000,000원 -남북의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중재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등 -중재인수당 보조
합계 : 350,000,000원	합계 : 370,000,000원
<p>연간 운영비 총합계 : 720,000,000원</p> <p>*기금추산 : 240억원 [은행 수신금리 연 3%(세액 공제후의 순금리)로 계산시의 추산금액임]</p>	

* 자료출처 : 필자 작성

V. 결 론

1989년 1,872만불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2003년 7.2억불로 크게 증대되었고 현재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무역 규모의 1/4규모로 성장하여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남북한 3대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적대감 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이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을 시장경제의 학습장으로 유도하는 기능과 함께 군사적 대치구역인 개성지역의 개방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의선의 경우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남북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으로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대륙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 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 남북간에는 현안문제가 되었던 상사분쟁해결합의서를 포함하여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중에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남북 교역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가까운 장래 탄생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간의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중재기구로서 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남북한은 물론 앞으로 한반도를 중

심으로하여 전개될 동서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 상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당국이 어렵게 탄생시킨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합의서상의 내용을 남북 당국이 철저하게 준수·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남북 당국의 합의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단지 문서상의 한 약정서에 불과한 중재기구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상사분쟁해결기구”이므로 그에 걸맞게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간에는 기존의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성격의 여러 대화기구가 가동되고 있지만 중재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남북한 거래당사자는 물론 남북한 투자와 무역에 관심을 가진 외국 당사자들도 그 이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남측은 중재법상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북측은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관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중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협정 체결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인적 및 물적 측면에서 중재관련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들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중재위원은 중재위합의서의 규정내용대로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출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사중재라는 제도가 사적 당사자간의 사적합의에 따라 구성된 자주법정(自主法廷)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

보다도 국제 상거래 종사자들에게 중재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인정받는 중재센터가 되어야 하고 관(官)주도에 의해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⁸⁾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분쟁관련 업무의 신속한 정책협의 촉진을 위해 중재위원 중 1인은 남북한 상사분쟁해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현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재판정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중재위원회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서 법원의 개입 없이 중재인 기피업무나 중재판정 취소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고등법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관련 업무를 4년의 임기동안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중재관련 업무의 현실적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필요한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금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기금이 확보된 후에는 기금이자

68) 이 점은 투자분쟁의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그렇다. 투자보장합의서상의 투자분쟁은 분쟁의 일방은 투자자(남북한 어느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이고 타방은 투자를 유치하는 남북한 일방의 당국(정부)이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관주도로 구성(예컨대 중재위원을 현직 공무원으로 지명하는 경우)되면 중재절차 진행이나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워싱턴협약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

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이자는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연간 인적 및 물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하며 기금의 이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금규모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 전(前) 단계에서의 분쟁해결노력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을 포함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상의 분쟁해결의 원칙은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이것이 실패할 때 중재나 재판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활동이 가동될 경우 남북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대부분은 ‘협의’단계에서 중재위원회 및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개입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행하는 클레임 알선제도를 남북간 분쟁해결에 준용하여 중재 전 단계에서의 분쟁해결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병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법무부 주최 논문집(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04.6.28).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 법무」, 1995.8.
-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IV권(1995.12).
- 통일부, 「북한동향」, 제664호(2003.10.10-16).
- KOTRA, 「북한뉴스레터」, 1999.8.

[관련자료]

한국 중재법(1999.12.31개정. 법률 제6083호)

한국 대외무역법(200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0.4.27. 대법원승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

남북사이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200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한-러 중재협정문(1994)

한-중 중재협정문(1992)

한-중 무역협정문(1992)

한-중 투자보장협정문(1992)

통일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2003.8.20).

북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1993)

북한 외국인투자법(1992)

북한 합영법(1984년 채택, 1994년 개정)

북한 합작법(1992)

북한 외국인기업법(1992)

북한 외국투자은행법(1993)

북한 대외경제계약법(1995)

북한 대외경제중재법(1999)

북한 개성공업지구법(2002)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2002)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워싱턴협약)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

부산일보 30면(1996.6.11)

문화일보 1면 및 5면(2004.8.12)

ABSTRACT

A Study on Plans for Efficient Administration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Sang-Ho Kim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ve reached two Agreements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s well as to set up an arbitral organization called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The Commission is an institutional organization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situation,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manage and control the Commission for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While analyzing the above two Agreements for dispute-settlement mechanism, the author proposes desirable ideas and dire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mmission as follows :

1. First of all, the Commission should become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which meets the demand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2.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s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be made by the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3.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tion Commission of South Korea because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institution in South Korea, statutorily empowered to settle any kind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Mutual Cooperatio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